의정활동보고서

제238회 임시회(2010. 1. 27 ~ 2. 10)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38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희망이 넘쳐나고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 재정을 확대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 4대강살리기사업, 녹색성장환경조성, 신종플루 예방과 방역활동, 인성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참으로 힘든 한 해를 지내왔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 덕분에 무역흑자 404억 불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됨으로써 한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가 국운 상승의 원년이 되도록 저탄소녹색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구히 누리도록 초석을 놓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신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전 도민이 골고루 잘 사는 부자 경북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검토해보는 기회로 삼고 남은 임기까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3백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큰 활동상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Ⅰ. 개　　황 ····· 4

Ⅱ. 의사일정 ····· 5

Ⅲ. 의안처리 ····· 12

Ⅳ. 민원처리 ····· 13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5

Ⅵ. 5분 자유발언 ····· 22

□ 권영만・박병훈 의원(2차 본회의) ····· 22

□ 고우현・박노욱 의원(3차 본회의) ····· 26

부　　록

□ 조례안 ····· 31

□ 기타안 ····· 82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는 2010년 1월 27일 11:00 개회하여 2월 1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26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7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4일,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권영만 의원, 박병훈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고우현 의원, 박노욱 의원)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238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0-2호(2010년 1월 15일)

라. 집회일시 : 2010년 1월 27일(수)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0년 1월 27일 ~ 2월 10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누계 92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7회 까지	775	43	120	111	111	102	102	114	55	17
238회	26	1	6	5	4	4	4	2		
누 계	801	44	126	116	115	106	106	116	55	17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7(수) 11:00 (제1차)	▢ 개 회 식 ▢ 간부공무원 소개 ▢ 안건처리 1.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 5(금) 11:00 (제2차)	▢ 일반사항 보고 ▢ 5분 자유발언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영만 의원(봉화군) ○ 통상문화위원회 박병훈 의원(경주시) ▢ 안건처리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4.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5(금) 11:00 (제2차)	10.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2.10(수)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의원(문경시) ○ 농수산위원회 박노욱 의원(봉화군) ▢ 안건처리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5(금) 13:3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7(수) 14:0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공보관실, 도청이전추진단	
1.28(목) 11:00 (제2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 안건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2. 2~2. 4 (3일)	▢ 현지확인 ○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자료수집	
2. 5(금) 10:00 (제3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새경북기획단 ▢ 현지확인 ○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상주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8(목) 11:00 (제1차)	▢ 현지확인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김천시 아포읍) ▢ 2010년도 업무보고 ○ 보건복지여성국(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1.29(금) 11:00 (제2차)	▢ 현지확인 ○ 대구·경북영어마을(칠곡군 지천면) ▢ 2010년도 업무보고 ○ 행정지원국(도 새마을회관)	
2. 1(월) 11:00 (제3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경북도립대학 ▢ 현지확인 ○ 예천군 성락어린이집(다문화가정 자녀)	
2. 2(화) 11:00 (제4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감사관실, 노인전문간호센터 ▢ 안건심사 ○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2. 9(화) 13:00 (제5차)	▢ 안건심사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7(수) 14:0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8(목) 11:00 (제2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도교육청 ▢ 안건심사 ○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2. 2 (2일간)	▢ 현지확인 ○ 영덕교육청, 통폐합학교 추진 현장(영덕)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7(수) 14:0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2. 1~2. 3 (3일간)	▢ 현장견학 ○ 경마공원·경주마목장 등 말 관련 산업현장 ○ 선진 농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등 현지시찰을 통한 우수사례 수집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8(목) 11:0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1.29(금) 11:00 (제2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문화체육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2(화) (1일간)	▢ 현지확인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경주)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포항)	
2. 3(수) (1일간)	▢ 현지확인 ○ 2010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상주) ○ 도내 투자유치기업(웅진폴리실리콘)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27(수) 13:00 (제1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소방본부 ○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안건심사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재해영양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4(목) (1일간)	▢ 현지확인 ○ 포항북부소방서	

Ⅲ. 의안처리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6 (404)	16 (398)	13 (320)	3 (73)	0 (4)	0 (1)	0 (2)	0 (4)	
조례안	소 계	14 (246)	14 (242)	11 (188)	3 (50)	0 (3)	0 (1)	0 (1)	0 (3)	
	의 회 제 안	6 (65)	6 (63)	6 (53)	0 (10)				0 (2)	
	도지사 제 출	6 (134)	6 (133)	4 (100)	2 (30)	0 (2)	0 (1)	0 (1)		
	교육감 제 출	2 (47)	2 (46)	1 (35)	1 (10)	0 (1)			0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결산		0 (34)	0 (34)	0 (14)	0 (20)					
동의·승인		0 (37)	0 (36)	0 (35)	0 (1)				0 (1)	
건 의 안		0 (8)	0 (7)	0 (7)				0 (1)		
결 의 안		0 (20)	0 (20)	0 (18)	0 (1)	0 (1)				
기 타 안		2 (55)	2 (55)	2 (55)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 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 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 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2 (106)	(7)	1 (12)	(6)	(46)	(4)	(2)	(7)	(7)	1 (15)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6)			(5)	(3)		(1)			(7)
행 정 보건복지	1 (14)	(6)	(5)							1 (3)
교 육 환 경	(9)					(4)		(5)		
농수산	(9)							(1)	(7)	(1)
통 상 문 화	1 (10)		1 (7)	(1)			(1)	(1)		
건 설 소 방	(42)				(41)					(1)
특 별 위원회	(3)				(2)					(1)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106)	2 (106)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6)	(16)				
행 정 보건복지	1 (14)	1 (14)				
교육환경	(9)	(9)				
농 수 산	(9)	(9)				
통상문화	1 (10)	1 (10)				
건설소방	(42)	(42)				
특별위원회	(3)	(3)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2건)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0. 1.1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1.18)
경상북도지사 (2010. 1.1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1.18)
박진현·이상용 의원외 23인 (2009.12.28)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안	기획경제 (2010. 1.18)
경상북도지사 (2010. 1.15)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1.18)
김종천의원외 23인 (2010. 1.18)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1.18)
경상북도교육감 (2010. 1.15)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1.18)
경상북도교육감 (2010. 1.1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1.18)
경상북도지사 (2010. 1.15)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건설소방 (2010. 1.18)
손진영의원외 23인 (2010. 1.15)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1.18)
김영택의원외 16인 (2010. 1.15)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1.18)
장병익의원외 19인 (2010. 1.15)	경상북도 지방재해영양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2010. 1.18)
장두욱의원외 15인 (2010. 1.15)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2010. 1.18)
김수용의원외 12인 (2010. 1.27)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1.28)
경상북도지사 (2010. 2. 4)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2. 4)

2. 조례공포 사항(2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12.31 (제3131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2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3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4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5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6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7호)
2009.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제3138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39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0호)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1호)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2호)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10. 1. 7 (제3143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4호)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5호)
2009.12.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 7 (제3146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11 (제3147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11 (제3148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11 (제3149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11 (제3150호)
2009.12.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2010. 1.11 (제3151호)

3. 의원동정

○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표창 수상(2009년 12월 23일)

○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수상(2009년 12월 30일)

○ **김영만(농수산)·이시하(행정보건복지) 위원장**

-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음(2010년 1월 7일)

○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주관

  “지방의회 우수활동사례” 대상 수상(2010년 1월 29일)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제47회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종합 탁구대회**

- 기 간 : 2009. 12. 27 ~ 31(5일간)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새천년기념관』 개관식**

- 일 시 : 2009. 12. 28(월), 14:00
- 장 소 : 포항 호미곶광장 새천년기념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야의 경북대종』 타종식**

- 일 시 : 2009. 12. 31(목), 2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제9차 이사회**

- 일 시 : 2009. 12. 29(화), 15:00
- 장 소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3층 세미나실
- 참 석 :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10』**

- 일 시 : 2010. 1. 1(금), 07:00
- 장 소 : 포항 호미곶광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신년 충혼탑 참배

- 일 시 : 2010. 1. 4(월), 07:00
- 장 소 : 영천호국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시무식

- 일 시 : 2010. 1. 4(월), 09:30
- 장 소 : 의회별관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매일신문사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0. 1. 4(월), 12: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0. 1. 7(목), 11: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등

○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 워크숍

- 일 시 : 2010. 1. 8(금), 15:00
- 장 소 : 영천 성덕대학, 구미 (주)영도벨벳
- 참 석 :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0. 1. 9(토), 11: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낙동강살리기사업 일반공구 기공식

- 일 시 : 2010. 1. 13(수), 15:00
- 장 소 : 안동 풍천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 도의원

○ 희망 2010,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발대식

- 일 시 : 2010. 1. 19(화), 14:00
- 장 소 : 영천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경북 산악연맹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0. 1. 19(화), 19:00
- 장 소 : 필로스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0. 1. 20(수), 18: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창립 9주년 정기총회

- 일 시 : 2010. 1. 22(금), 11:10
- 장 소 :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 JC지구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10. 1. 22(금), 18:00

- 장 소 : 경주 콩코드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ㅇ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10. 1.25(월), 11:00
- 장 소 : 포항 송도 코모도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ㅇ **캄보디아 프놈펜-대구경북 문화통상교류센터 개소식**

- 기 간 : 2010. 1. 25 ~ 27(3일간)
- 장 소 : 캄보디아
- 참 석 : 이상천 의장

5. 인사이동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김 충 섭	2010. 1. 11자
통상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재 탁	2010. 1. 11자
교육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남 택 진	2010. 1. 18자

Ⅵ. 5분 자유발언

□ 2010년 2월 5일(금) 제23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밭작물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도의 밭작물 생산현황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밭작물의 대표 작목인 두류는 2만 5961톤으로 전국의 17.7%를 차지하여 전남에 이어 2위이고, 잡곡생산량은 7903톤으로 전국 3위의 생산량을 점유하는 등 농가소득원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다양성 유지와 경관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참살이 먹거리 재료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국내산 안전농산물 공급의 다원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경지정리, 경작로 및 용수시설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도내 밭 기반정비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전체 밭 면적 13만 4000ha의 32%인 4만 3009ha가 개발대상 면적이며, 지난해까지 개발대상 밭 면적의 38%인 1만 6208ha로 저조한 기반정비 수준에 있습니다.

개발대상 밭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추진실적을 보면 상주 98%, 울진 94%, 문경 85%, 경산 78%, 의성과 칠곡 64%, 군위 56%, 구미 54%, 영덕 53%로 절반이상을 추진한 반면 청도 24%, 김천, 예천, 영양 25%, 안동 29%, 봉화와 청송 33%, 포항, 경주 35%, 영주 38%, 상주 42%로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고령과 울릉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밭 생산기반시설의 중요한 사업내용 중 하나인 용수개발을 통한 관개수로 확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 피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부터 시작하여 16년간 추진한 결과가 38%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밭작물이 주요 농가소득원인 봉화군 등 북부지역 시·군 밭작물 생산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시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에 필수적인 이앙기 5만 6830대, 콤바인 1만 2651대 등 일반 농기계 보유현황에서는 전국 1위의 보유율을 보이는 반면, 밭작물 수확기 보유현황은 도내 전체 2477대로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봉화군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1만 2302ha 중 밭이 8508ha로 70%에 이르는 밭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밭작물 수확기의 보유현황은 109대로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밭에 대한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경작로 개설, 밭작물 수확기의 보급 등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밭작물 생산 농업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밭작물 생산 기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농업에는 논 중심의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밭작물 또한 우리 먹거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논농사의 생산기반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이상으로 밭농사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와 지원대책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시책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밭작물 생산 농업인도 함께 잘 사는 도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내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2월 5일(금) 제23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병훈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경주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현재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신학기가 오면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의 중고생 교복 공동구매가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오히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교복대리점 업주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협박과 강요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복구매와 관련한 문제가 해당 교복업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타 도시에 비해 교복건전구매나 공동구매에 대한 일선학교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학교수는 2007년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 공동구매율이 8.3%이며, 2008년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8개교로 공동구매율이 13.4%로 나타나 교복 공동구매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8년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공동구매율이 23.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현저히 낮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 현재 공동구매율의 경우 서울 61.9%, 경남 47.7%, 대구 39.8% 등인데 비해 경북도의 경우 14.5%에 그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평균가격은 20만 9540원이며 공동구매가는 15만 2740원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30% 정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더 나아가서 교복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북도의 경우 교복 공동구매율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보니 도내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훨씬 비싼 교복을 입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소규모 학교가 많아 원가부담률이 높아 심지어 3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부담률이 높다보니 당해 교복을 제작치 않는 회사가 있으며, 있다 할지라도 전년도 재고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경제상황에 30만 원에 이르는 교복을, 그것도 재고품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통하여 교복업체와 학부모간의 직거래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공동구매 학교수를 50% 이상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공동구매를 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경우 공동구매율이 35.8%에 이르고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교복의 건전한 구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구체적으로 내려 보내고, 교복 공동구매가 단위학교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수가 적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학교는 인근 도시 또는 대도시 학교와 결연을 맺어 같은 교복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가격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의 경우 진학 대상 중학교의 발표를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앞당기는 등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의 탄력적 운영, 교복 및 체육복 물려 입기, 체격이 맞지 않아 교체하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교복 건전구매를 위한 도와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2월 10일(수) 제23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고우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역, 내 고장에 양돈 1만 마리의 축사를 건축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음식물을 먹다 남은 찌꺼기를 수거하여 만든 습식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다 남은 죽을 돼지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음식물 찌꺼기를 타 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성남시, 포천시와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서 1일 5톤 1대, 10톤 2대의 물량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음식물 찌꺼기를 경상북도에다가, 그것도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백두대간 줄기인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산 72-3번지 외 6필지, 속칭 달곡이라 합니다. 이 먼 곳까지 가지고 와서 돼지 사료로 먹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북은 타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연간 3만두의 새끼돼지를 타 지역에서 대부분 구입한다고 합니다. 무슨 질병이 청정지역에서 발생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간 3만 마리에서 생산되는 많은 배설물은 아무리 건축시설을 현대화한다 해도 70%밖에 정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천년고찰인 대승사와 김용사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 옛 선인들이 지은 석문정을 비롯한 석문9곡은 봄, 여름,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관광지역입니다. 이곳에 수질오염의 대명사인 기업형 돈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표본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관리지역이라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문경시에 허가 통보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30여 명의 주민 동의만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임에도 설명회 한번 없이 법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차후 발생되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습식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지역의 농산물을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현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일궈놓은 전답은 가격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고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지역 면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제도 상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을 도지사께서는 한번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불쌍하고 선량한 농민들의 애끓는 삶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자연 그대로 간직하여 청정지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0년 2월 10일(수) 제23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노욱 의원(농수산위원회) ◎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에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도 하나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구시대적 판단에 따라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외 버스는 수익성이 없는 전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액, 버스차량 환경개선사업 및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지원은 너무나 미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택시업계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봉화지역에는 영업용 27대, 개인택시 41대, 총 6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구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1일 사납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택시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사정은 도내 농어촌 오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5일장과 같은 정기 시장일이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몇 사람씩 조를 짜서 택시를 불러야

하는 형편이며,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업계의 부담이 택시운전자와 이용승객인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해마다 택시요금 인상과 서비스 불친절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택시도 노선버스처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승강장과 거리가 0.5km 이상이고, 통상 택시의 요금이 3000원 이상인 오·벽지 62개 노선에 대하여 1일 2~4회의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3억 3000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택시업계 적자보전 관련 지원현황이 2008년의 경우 유가보조금으로 113억 7900만 원 지원 및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 특소세 면제, 차량등록세 면제 등의 통상적인 지원 외에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택시업계에 최소한 대당 일정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택시업계의 환경개선은 물론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를 탈 수 없는 농어촌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며, 도 차원에서 택시업계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6건

□ 기 타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상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

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인 대표
6. 재래시장 대표
7.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매년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출석으로”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5인 이상 12인 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출석으로”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 (생략)	제10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②~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략)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 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6개월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명----------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역교육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제2조에 관한 사항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지사 간에 두는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역교육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①지역교육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생략)	**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	-
제11조(운영세칙)(생략)	**제12조(현행 제11조와 같음)**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봉현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병설유치원, 물야초등학교개단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2의 의곡초등학교우라분교장, 부석초등학교남대분교장,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 상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3의 봉화중학교봉성분교장, 울릉중학교태하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봉현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210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병설유치원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371
물야초등학교개단분교장병설유치원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844-2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의곡초등학교우라분교장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988
부석초등학교남대분교장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354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371
상천초등학교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04-1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봉화중학교봉성분교장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380-2
울릉중학교태하분교장	울릉군 서면 태하리 553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18. 연안항 해양환경 보전관리

제13조 중 제25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45호까지로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위임국도 업무의 총괄·조정

제57조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2 중 영천소방서 위치란 “영천시 성내동 148-23”을 “영천시 조교동 56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환경해양산림국) (생략)	제11조(환경해양산림국) (현행과 같음)
1~16. (생략)	1~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신 설>	18. 연안항 해양환경 보전관리
17~24. (생략)	19~26. (현행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제13조(건설도시방재국) (생략)	제13조(건설도시방재국) (현행과 같음)
1~24. (생략)	1~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위임국도 업무의 총괄·조정
25~44. (생략)	26~45. (현행 제25호부터 제44호까지와 같음)
제57조(소관사무) (생략)	제5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9. (생략)	8~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별표2]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2]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영천소방서	영천시 성내동 148-23	영천시 일원
⋮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	영천시 조교동 566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436명”을 “4,6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97명”을 “1,89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400명”을 “2,5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98명”을 “97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7%이내	22%이내	36%이내	33%이내	2%이상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율	6%이내	26%이내	31%이내	24%이내	13%이상

별표3 중 합계란 “4,436”을 “4,604”로, 일반직 소계란 “1,383”을 “1,380”으로, 일반직 5급이하란 “1,299”를 “1,296”으로, 소방직 소계란 “2,400”을 “2,570”으로, 소방직 소방령이하란 “2,382”를 “2,552”로, 기능직 계란 “353”을 “35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3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97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400명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8명</td><td>제2조(정원의 총수) ……
……4,604명……
……
1. …… : 1,896명
2. ……
…… : 2,570명
3. (현행과 같음)
4. …… : 97명</td></tr>
<tr><td>[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table>
<tr><td>구분</td><td>4급이상</td><td>5급</td><td>6급</td><td>7급</td><td>8·9급</td></tr>
<tr><td>비율</td><td>6%이내</td><td>21%이내</td><td>36%이내</td><td>34%이내</td><td>3%이내</td></tr>
</table>
3. 기능직공무원
<table>
<tr><td>구분</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d>10급</td></tr>
<tr><td>비율</td><td>6%이내</td><td>25%이내</td><td>32%이내</td><td>24%이내</td><td>13%이내</td></tr>
</table></td><td>[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table>
<tr><td>구분</td><td>4급이상</td><td>5급</td><td>6급</td><td>7급</td><td>8·9급</td></tr>
<tr><td>비율</td><td>7%이내</td><td>22%이내</td><td>36%이내</td><td>33%이내</td><td>2%이내</td></tr>
</table>
3. 기능직공무원
<table>
<tr><td>구분</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d>10급</td></tr>
<tr><td>비율</td><td>6%이내</td><td>26%이내</td><td>31%이내</td><td>24%이내</td><td>13%이내</td></tr>
</table></td></tr>
<tr><td>[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table>
<tr><td>기관별
직급별</td><td colspan="2"></td><td>합 계</td><td>본청</td><td>의회</td><td>직속기관</td><td>사업소</td></tr>
<tr><td colspan="3">합 계</td><td>4,436</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일반직</td><td colspan="2">소 계</td><td>1,383</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5급이하</td><td>1,299</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4"></td></tr>
</table></td><td>[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table>
<tr><td>기관별
직급별</td><td colspan="2"></td><td>합 계</td><td>본청</td><td>의회</td><td>직속기관</td><td>사업소</td></tr>
<tr><td colspan="3">합 계</td><td>4,604</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일반직</td><td colspan="2">소 계</td><td>1,380</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5급이하</td><td>1,296</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4"></td></tr>
</table></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						
소방직	소 계	2,400				
	⋮					
	소방령이하	2,382				
기능직 계		353				
⋮						

기관별 /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						
소방직	소 계	2,570				
	⋮					
	소방령이하	2,552				
기능직 계		354				
⋮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우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제3조(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의 개정)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6조(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의 개정)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7조(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사업활성화촉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 및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

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를 도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건설업자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우수 기업인으로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공사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관계자들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2. 대구지방조달청장
3.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5.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7.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8.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10. 그 외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임기)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0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총괄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0조(협의회 구성) ①~⑤ (생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신 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10. 그 외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⑥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제10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0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상북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2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도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도지사는 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표】

경상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 계	247	총 정수 284인(비례대표 37, 지역구 247)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가”선거구	2	흥해읍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다”선거구	2	양학동, 용흥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라”선거구	4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마”선거구	3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바”선거구	2	해도동, 송도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사”선거구	2	상대동, 제철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아”선거구	3	청림동, 효곡동, 대이동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자”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차”선거구	2	오천읍	(개정안과 같음)		
포항시“카”선거구	3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 의원정수 21인(비례대표 3, 지역구 18)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가”선거구	2	용강동, 황성동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나”선거구	2	중부동, 성건동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다”선거구	3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라”선거구	2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마”선거구	2	안강읍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바”선거구	2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사”선거구	2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개정안과 같음)		
경주시“아”선거구	3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가”선거구	3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나”선거구	2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다”선거구	2	자산동, 지좌동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라”선거구	2	대신동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마”선거구	3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개정안과 같음)		
김천시“바”선거구	3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가”선거구	2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나”선거구	2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다”선거구	2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라”선거구	2	옥동, 송하동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마”선거구	2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바”선거구	2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사”선거구	2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개정안과 같음)		
안동시“아”선거구	2	용상동, 강남동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가”선거구	3	도량동, 선주원남동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나”선거구	2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다”선거구	2	형곡1동, 형곡2동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라”선거구	2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구미시“라”선거구	3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마”선거구	2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바”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구미시“마”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구미시“사”선거구	3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바”선거구	3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아”선거구	3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사”선거구	2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아”선거구	2	고아읍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개정안과 같음)		
영주시“가”선거구	3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개정안과 같음)		
영주시“나”선거구	3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개정안과 같음)		
영주시“다”선거구	3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개정안과 같음)		
영주시“라”선거구	3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개정안과 같음)		
영천시 의원정수 12인(비례대표 2, 지역구 10)			(개정안과 같음)		
영천시“가”선거구	2	완산동, 남부동, 서부동, 북안면	(개정안과 같음)		
영천시“나”선거구	3	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개정안과 같음)		
영천시“다”선거구	3	동부동, 중앙동	(개정안과 같음)		
영천시“라”선거구	2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화북면, 화남면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상주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가”선거구	2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나”선거구	2	외서면,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다”선거구	3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라”선거구	3	청리면,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외남면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마”선거구	3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개정안과 같음)		
상주시“바”선거구	2	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개정안과 같음)		
문경시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개정안과 같음)		
문경시“가”선거구	3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개정안과 같음)		
문경시“나”선거구	2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개정안과 같음)		
문경시“다”선거구	2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	(개정안과 같음)		
문경시“라”선거구	2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가”선거구	2	중앙동, 남부동, 북부동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나”선거구	2	압량면, 동부동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다”선거구	2	서부2동, 중방동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라”선거구	3	서부1동,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마”선거구	2	하양읍, 와촌면	(개정안과 같음)		
경산시“바”선거구	2	진량읍, 자인면	(개정안과 같음)		
군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군위군“가”선거구	3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개정안과 같음)		
군위군“나”선거구	3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 의원정수 13인(비례대표 2, 지역구 11)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가”선거구	3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나”선거구	2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다”선거구	2	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라”선거구	2	구천면, 비안면, 안계면	(개정안과 같음)		
의성군“마”선거구	2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개정안과 같음)		
청송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청송군“가”선거구	3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개정안과 같음)		
청송군“나”선거구	3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영양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영양군“가”선거구	3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개정안과 같음)		
영양군“나”선거구	3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개정안과 같음)		
영덕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영덕군“가”선거구	3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개정안과 같음)		
영덕군“나”선거구	3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개정안과 같음)		
청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청도군“가”선거구	3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개정안과 같음)		
청도군“나”선거구	3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개정안과 같음)		
고령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고령군“가”선거구	3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개정안과 같음)		
고령군“나”선거구	3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개정안과 같음)		
성주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개정안과 같음)		
성주군“가”선거구	3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개정안과 같음)		
성주군“나”선거구	2	용암면, 수륜면, 대가면	(개정안과 같음)		
성주군“다”선거구	2	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	(개정안과 같음)		
칠곡군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개정안과 같음)		
칠곡군“가”선거구	2	왜관읍	(개정안과 같음)		
칠곡군“나”선거구	2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개정안과 같음)		
칠곡군“다”선거구	3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개정안과 같음)		
칠곡군“라”선거구	2	석적읍	(개정안과 같음)		
예천군 의원정수 9인(비례대표 1, 지역구 8)			(개정안과 같음)		
예천군“가”선거구	2	예천읍	(개정안과 같음)		
예천군“나”선거구	2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개정안과 같음)		
예천군“다”선거구	2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개정안과 같음)		
예천군“라”선거구	2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개정안과 같음)		
봉화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개정안과 같음)		
봉화군“가”선거구	2	봉화읍, 물야면	(개정안과 같음)		
봉화군“나”선거구	2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개정안과 같음)		
봉화군“다”선거구	3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개정안과 같음)		
울진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개정안과 같음)		
울진군“가”선거구	2	울진읍, 서면	(개정안과 같음)		
울진군“나”선거구	2	북면, 죽변면	(개정안과 같음)		
울진군“다”선거구	3	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개정안과 같음)		
울릉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개정안과 같음)		
울릉군“가”선거구	4	울릉읍	(개정안과 같음)		
울릉군“나”선거구	2	서면, 북면	(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지사 행정지원국

2.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2월 4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2월 9일

○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0. 2. 9 상정, 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재홍

나. 제안이유

○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되면서 광역(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09.3.26)을 받은 일부지역 등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ㅇ 다가오는 2010년 6월 2일 시행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함.

4.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시·군의회의 의원 총 정수는 284명(비례대표 37,지역 247)으로 현행대로 유지하여,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군의원 지역역구 의원정수 : 101개, 247명

5. 검토의견(전문위원 :김지섭)

□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평등선거 원칙(투표권 불평등)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금년 6월 2일에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고자 함에 있음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지역구 247

명, 비례 37명으로 총 284명으로 획정하였음

○ “별표”의 선거구 개정 내용 가운데,

- 먼저, 포항, 경주, 구미, 경산시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광역(도)의원 선거구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것임

- 포항시의 경우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역(도)의원 선거구내에서 인구와 행정동을 기준으로 시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고 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음.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포항시 “라” 선거구의 경우 인구 71,506명과 3개 행정동에 시의원 정수는 4명인 반면, 포항시 “마” 선거구의 경우 인구 76,370명, 3개 행정동에 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행정동의 수는 같으나 인구가 4,864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정수에서 “마” 선거구가 “라” 선거구보다 1명이 적게 획정된 것은 인구와 행정동을 50:50으로 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주시의 경우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역(도)의원 선거구내에서 현행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한 것임

- 구미시의 경우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역(도)의원 선거구내에서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한 것임.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2건의 의견이 현행까지는 도농복합인 구미지역의 특성상 국회의원 선거구 “갑”과 “을”지역이 현행에서는 시의원 정수를 같은 비율로 유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갑”지역에 의원정수가 1명 더 많게 획정되어 “을”지역의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산시의 경우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역(도)의원 선거구내에서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경산시 “마” “바”선거구를 신설 규정하고 있음

○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선거구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투표권 불평등)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김천시 “라”, 영천시 “다”, 상주시 “마” 선거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김천시 선거구의 경우 현행 7개의 선거구를 6개로 줄이고, 의원 1인당 기준 인구 9,090명을 기준으로 상한 14,544명, 하한 3,636명으로 정하여 인구 편차가 1:4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 영천시 선거구는 의원 1인당 기준 인구 10,331명을 기준으로 상한 16,530명, 하한 4,133명으로 정하여 인구 편차가 1:4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선거구 정수를 1명 늘이고, “라”선거구 정수를 1명 줄였음

- 상주시 선거구는 현행 7개의 선거구를 6개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1인당 기준 인구 7,059명을 기준으로 상한 11,295명, 하한 2,824명으로 정하여 인구 편차가 1:4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하였음

○ 성주, 예천, 울진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 성주군은 현행 선거구 “용암면”, 예천군은 현행 선거구 “용문면”, 울진군은 현행 선거구 “근남면”이 개정된 광역(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1선거구에서 제2선거구로 조정하고, 성주군은 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각각 조정하고, 예천과 울진군은 선거구만 조정하였음

○ 그 밖의 안동시의 경우 현행 선거구 “다”선거구 의원정수 4명을 “다”와 “라”선거구 각 2명으로 조정하고, “바”선거구 의원정수 4명을 “사”와 “아”선거구 각 2명으로 조정한 것은 안동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개별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획정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2010. 1.25)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역(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2009.3.26, 헌법재판소)을 받은 김천, 영천, 상주시의 선거구 조정, 안동시의 선거구 조정 의견을 반영하는 등 11개 시·군의 선거구를 조정하고, 12개 시·군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획정하였음

○ 따라서, 시·군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광역(도)의원 지역구별로 시·군의원정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기준(공

직선거법에서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기준) 주민등록법상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50:50으로 하여 산정 배분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현행 선거구를 위주로 하여 조정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포항시의회와 구미시의회 의원선거구별 의원정수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0년 2월 4일과 5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포항시와 경산시의 광역의원 지역구가 조정(수정)되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본회의 처리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후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제안되면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접합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 최근 경산시와 포항시 선거구에 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에 있음.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북도의 향후 추가 일정에 대하여 질의함.

답변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군과 의회 및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임시회 일정 정하여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조례에 반영되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음

7. 토론요지 :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김천시 “라”, 영천시 “다”, 상주시 “마” 선거구의 경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주어야 함에도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전반적으로 4인선거구가 줄어들고 2인선거구가 늘어난 것은 중대선거구 제도의 당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중대선거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4인 선거구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와 정수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구미시의 경우 동지역에 비하여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의 시의원수가 9명으로 동지역보다 2명이 적은 것은 불합리함. 읍·면지역을 대표하고 민원(고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의원선거구와 정수의 조정이 필요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0년 2월 9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전부개정 조례안 제2조의 별표 중 구미시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도농복합형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원정수 기준을 인구편차보다는 지역구의 넓은 읍·면지역에 정수를 확대하여 동(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의원정수를 동일하게 배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의 별표 중** 구미시 선거구에서 “라”와 “마”선거구를 “라”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를 3명으로 조정하고, “바”, “사” 선거구를 “마”, “바”선거구로 하고, “아”선거구 중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을 “사”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고, “아”선거구는 고아읍으로 하고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표〕

경상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구미시“가”선거구	3	도량동, 선주원남동	구미시“가”선거구	3	도량동, 선주원남동
구미시“나”선거구	2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구미시“나”선거구	2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구미시“다”선거구	2	형곡1동, 형곡2동	구미시“다”선거구	2	형곡1동, 형곡2동
구미시“라”선거구	2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구미시“라”선거구	3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마”선거구	2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바”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구미시“마”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구미시“사”선거구	3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바”선거구	3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아”선거구	3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사”선거구	2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아”선거구	2	고아읍

□ 기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번호	403

제안일 : 2010. 2. 10
제안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 사　　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원(15명) 중 1명 결원
※ 건설소방위원회 **이현준 의원** 사임

□ 관련근거 : 경상북도의회위원조례　제9조

□ 임　　기 : 2010. 6. 30까지

□ 추천위원 : **장 두 욱　의 원**(건설소방위원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2010. 7 인쇄 / 2010.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